

『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조항 신설(안 제4조)
 -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
-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(안 제5조)
 -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
-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1조)
 -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
-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2조)
 -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홍보하고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규정
- 아동친화도 조사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3조)
 -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규정
- 아동참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3조 ~ 제32조)

-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-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관련 조항 신설(안 제33조 ~ 제35조)
- 아동의 권리보장 및 개선을 위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규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비영리 법인, 단체 등에 대한 보조 및 위탁근거 명문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